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53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정의와 전용료를 전용사용료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상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단체입장시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전용료를 전용사용료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
- 나. 사용료의 개념에 이용료를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6호).
- 다. 입장료를 입장권의 금액으로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 라. 단체입장시 할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3항).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자치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sjulee20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1조제3항 본문 중 “전용료”를 각각 “전용사용료”로 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중 “요금”을 “요금(제4호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구입하여야 하며”를 “구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입장료는”을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100명 이상의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각각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2. (생략)</p> <p>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u>전용료</u>”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생략)</p> <p>5. (생략)</p> <p>6. “사용자”라 함은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u>요금</u>을 말한다.</p> <p>7. ~ 13. (생략)</p> <p>제11조(사용료의 징수)</p> <p>① ~ ② (생략)</p> <p>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전용자는 초과 1시간당 <u>전용료</u>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p> <p>④ ~ ⑤ (생략)</p> <p>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장시 또는 관람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u>구입하여야 하며 단체의 경우 일괄징수할 수 있다.</u> 다만 시행규칙으로 무료입장자를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u>입장료</u>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전용사용료</u></p>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u>요금(제4호의 이용료를 포함한다)</u>.....</p> <p>7. ~ 13.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료의 징수)</p> <p>① ~ ② (생략)</p> <p>③..... <u>전용사용료</u></p> <p>④ ~ ⑤ (생략)</p> <p>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u>구입하여야 한다</u>.....</p> <p>②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u>③100명 이상의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각각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다.</u></p>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참 고 자 료

□ 광역시별 입장권의 금액

자치단체	개정일	금 액(원)		비고
		어른	어린이	
대전	'02. 12. 30	200	100	
부산	'09. 03. 04	200 (30명 이상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1인당 100원)	100 (30명 이상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1인당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른 : 19 ~ 65세 ▪어린이 : 어린이(유아, 즉 취학전 어린이 제외), 청소년(13세 ~ 18세)
대구	'07. 04. 3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1회에 한함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포함)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제1급 내지 제3급은 보호자 1인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
인천	'06. 11. 20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경기와 행사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 (단, 주최측에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때)
광주	'12. 04. 01	200	100	
울산	'08. 05. 08	1,000	500	